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25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10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8.10.19.

다. 상정일자 :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8.10.25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유상한】

가. 제안이유

법제처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
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권고

- 소집불응시 불이익 조항 삭제 등(안 제8조)

-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금지행위 삭제(안 제10조)

- 의무교육시간 규정 삭제(안 제12조)

○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지역내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권고에 따라 안 제8조, 안 제10조, 안 제12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